

# 부천시부업대학생운영조례안심사보고

##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2년 10월 2일 부천시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02년 10월 2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100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2002년10월11일) 상정
- 제100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2002년10월11일) 의결

##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총무과장 이상훈)

### □ 제안이유

- 방학을 이용하여 학비의 일부를 충당하고자 부업을 희망하는 대학생에게 취업의 기회제공 및 근로를 통한 자립정신을 배양하고 폭넓은 사회경험을 토대로 건전한 가치관을 함양하게 함은 물론 시정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경제적으로 어려운 대학생에게 학비조달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부업대학생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 주요골자

- 부업대학생 자격은 모집공고일 현재 부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및 전문대학 이상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으로 함(안 제2조)
- 부업대학생도 동계 및 하계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공휴일을 제외한 월 25일간 근무하되 근무시간은 부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준용함(안 제3조)
- 부업대학생 모집인원은 각 실과소 및 구·동의 소요인원을 파악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동·하계 2기로 구분모집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 부업대학생은 부천시홈페이지, 복사골신문 및 기타 홍보매체 등을 이용하여 모집함(안 제5조)

### 3. 질의 및 답변요지

질의 내용	답변 내용
○ 타 시·군도 운영하는 사례가 있는지	○ 전국적으로 12개 시, 군이 운영하고 있으며 3개 시, 군이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 중임.
○ 시에서는 처음 운영하는 것인지	○ '97년 이전에 조례제정 없이 지침으로 운영한 사례가 있음
○ 금년 여름방학기간 중 동사무소에 대학생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 그 내용은	○ 정부시책인 공공근로사업으로 대학생을 우선 선발하여 운영하였음 부업대학생과는 다른 취지임
○ 가정형편이 어려운 자를 우선 선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 수급자를 우선 선발하는 규정을 두었음
○ 특정학생이 계속하여 선발되는 폐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선발 제한 규정을 두는 것은	○ 타당함
○ 일당은 얼마로 예상하는지	○ 일용인부지급수준인 25,000원 정도임

### 4. 토론요지

#### 가. 찬성토론

- 취업 전 대학생에게 사회경험의 기회를 부여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에게 학비조달의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바람직하나,
- 가정형편이 어려운 자를 우선 선발하고, 특히, 일부학생이 계속하여 선발되는 불합리한 점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선발 제한 규정을 두는 것이 합리적임

#### 나. 반대토론

- 없음

5. 심사결과

수정의결

6. 수정안의 요지

별첨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부천시부업대학생운영조례안에대한수정안

의안번호	관련 제38호
의결 년월일	2002. 10. 17 (제100회)

제안년월일 : 2002. 10. 16

제안자 : 행정복지위원장

## 1. 수정이유

- 방학을 이용하여 학비의 일부를 충당하고 취업의 기회제공 및 근로를 통한 자립정신을 함양하는 바람직한 제도이나,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을 우선 선발 그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하여 선발 우선순위를 정하고,
- 특히, 일부학생들이 계속하여 부업을 하는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고 선발에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제외한 일반 학생의 경우 연 1회 이상 할 수 없도록 제한 규정 삽입

## 2. 주요골자

- 신청자가 모집인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의거 선발한다로 수정  
(안 제6조2항)
  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
  2. 차상위계층의 자녀
  3. 그 외의 자는 추첨으로 결정하되 연 1회 이상 참여할 수 없다.

## 부천시부업대학생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부천시부업대학생운영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신청자가 모집인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의거 선발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
2. 차상위계층의 자녀
3. 그 외의 자는 추첨으로 결정하되 연 1회 이상 참여할 수 없다.

## 신 · 구 조문 대조표

제 정 안	수 정 안
<p>제6조(선발) ①(생략)</p> <p>②신청자가 모집인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를 우선 선발하고 모집정원이 초과될 경우에는 추천일을 정하여 본인이 직접 추천하도록 한다.</p>	<p>제6조(선발) ①(변형과 같음)</p> <p>②신청자가 모집인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의거 선발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li> <li>2. 차상위계층의 자녀</li> <li>3. 그 외의 자는 추천으로 결정하되 연 1회 이상 참여할 수 없다.</li> </ol>

## 부천시부업대학생운영조례제정안

의안번호	제38호
의결 년월일	2002. 10. 17 (제100회)

제출년월일 : 2002. 10. 1

제출자 : 부천시장

### □ 제안이유

- 방학을 이용하여 학비의 일부를 충당하고자 부업을 희망하는 대학생에게 취업의 기회제공 및 근로를 통한 자립정신을 배양하고 폭넓은 사회경험을 토대로 건전한 가치관을 함양하게 함은 물론 시정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경제적으로 어려운 대학생에게 학비조달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부업대학생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 주요골자

- 부업대학생 자격은 모집공고일 현재 부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자 및 전문대학 이상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으로 함(안 제2조)
- 부업대학생도 동계 및 하계방학기간을 이용하여 공휴일을 제외한 월 25일간 근무하되 근무시간은 부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준용함(안 제3조)
- 부업대학생의 모집인원은 각 실과소 및 구·동의 소요인원을 파악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동·하계 2기로 구분모집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 부업대학생은 부천시홈페이지, 복사골신문 및 기타 홍보매체 등을 이용하여 모집 함(안 제5조)

□ 제정 조례안 : 불 입

□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 관계법령 발췌서 : 해당없음

□ 관련 사업계획서 : 해당없음

□ 예산 수반상황 : 해당없음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없음

부천시조례 제 호

## 부천시부업대학생운영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방학을 이용하여 학비의 일부를 충당하고자 부업을 희망하는 대학생(이하 “부업대학생”이라 한다)에게 취업의 기회제공 및 근로를 통한 자립정신을 배양하고, 폭넓은 사회경험을 토대로 건전한 가치관을 함양하게 함은 물론 시정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경제적으로 어려운 대학생에게 학비 조달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부업대학생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격) 부업대학생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모집 공고일 현재 부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2. 전문대학이상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

제3조(운영기간 및 근무시간) 부업대학생은 동계 및 하계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공휴일을 제외한 월 25일간 근무하되 근무시간은 부천시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준용한다.

제4조(모집 및 예산) 부업대학생의 모집인원은 각 실·과·소 및 구·동의 소요인원을 파악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동·하계 2기로 구분 모집할 수 있다.

제5조(모집홍보) 부업대학생은 부천시홈페이지, 복사골 신문 및 기타 홍보매체 등을 이용하여 모집한다.

제6조(선발) ①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부업활동을 희망하는 자는 모집기간중 시장에게 다음 각호의 1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부업대학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재학증명서 1통
2.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1통(해당자에 한함)

②신청자가 모집인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를 우선 선발하고 모집정원이 초과될 경우에는 추첨일을 정하여 본인이 직접 추첨하도록 한다.



제7조(근무) ①부업대학생은 배치된 소속 부서장의 지시에 따라 근무하고  
가급적 현장근무 위주로 한다.

②3일이상 근무에 임하지 않거나 소속 부서장의 정당한 업무지시 불이행,  
부업 대학생의 품위손상 등 사유 발생시 근무중지를 시킬 수 있다.

③부업대학생은 근무기간동안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부업대학생 근무일지를  
작성하여 소속 부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실비보상) 부업대학생에 대한 보상은 당해연도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한 업무보조 일용인부 노임단가를 준용하되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서식)

## 부업대학생 근무일지(제7조 관련)

일 시	년 월 일(요일)			
작성자	학교 과 학년 성명 : (인)			
오늘 한 일				
건의 사항				
느낀 점				
부서 장 확 인	소속	직	성명	서명